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협회

우 48941(부산 중구 중앙대로80(중앙동4가)) / 전화(051)977-0500~2/전송977-0503 담당:이종성

문서번호 : 부산 제372호 시행일자 : 2024, 2, 23,

(경유)

수 신 : 보세구역 회원사 대표

참 조 : 보세화물관리 업무 담당자

선 결 접		ス よ
접	일 시	결 재
수	번 호	재
처	리 과	
담	당 자	람

제 목 : 관세청 「보세구역 운영인의 보세운송물품 반출입 확인 유의사항」 안내

- 1.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-612(2024. 2. 20.) 관련입니다.
- 2. 「관세법」제216조제3항 및 제277조가 개정·시행('24.1.1.)되어 보세운송하려는 자가 보세운송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(차량)으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관세법 시행령 '24.2.29. 공포 예정)
- 3.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「보세구역 운영인의 보세운송물품 반출입 확인 업무절차」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세구역 회원사께서는 보세화물관리 업무 수행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발송지 보세구역 운영인

- ①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보세운송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보세화물을 반출하여야 함(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7조제4항)
- ② 보세운송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보세운송화물의 반출을 제한하여야 함

나.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

① 보세운송으로 도착한 차량이 보세운송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및 보세운송신 고·승인된 차량(보세구역 배차예정정보 통보서에 기재된 차량)과 실제 보세운송한 차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반입

(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3항,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1조제3항)

② 보세운송신고·승인된 차량과 실제 보세운송한 차량이 다른 경우 세관에 전산으로 반입이상보고서 제출

< 반입이상보고서 기재 방법 >

항목명	이상유형부호	이상내용
기재내용	ETC(기탁)	보세운송신고 승인된 차량과 실제 운송차량이 불일치

한 국 관 세 물 류 협 회 부 산 협 회 장

< 직 인 생 략 >

₩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

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5, 2층 / 전화 : 02-701-1455 / 팩스 : 02-701-1459 / 당당 : 신명길

문서번호 : 회원사지원 제 412 호

시행일자: 2024. 3. 26.

수 신: 보세운송·보세구역 회원사 대표

참 조:

제 목 : 보세운송신고 업무처리 유의 및 회원사 지원방안 추진 현황 보고

- 1. 최근 세관에서 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 시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한 <u>'배차예정내역신고서 제출'을 누락하는 사례</u>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동향을 확인하였습니다.
- 2, 이에 우리 협회는 보세운송·보세구역 회원사에게 세관 동정을 안내하오니 보세운송신고 업무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3. 아울러, 우리 협회는 「관세법령」 개정으로 보세운송신고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운송 시 과태료 부과, 관세청의 배차예정내역신고 및 출도착 관리 강화 등에 대하여, 보세운송·보세구역 회원사의 보세운송제도 업무처리 적법성 제고 및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「보세운송 업무처리 지원방안」을 마련하고 추진 현황을 보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불 임:「보세운송 업무처리 지원방안 추진 현황」보고서 1부, 끝,

사단법인 한 국 관 세 물 류 협



회원사「보세운송 업무처리 지원방안」추진 현황

(사)한국관세물류협회 / 2024.3.

□ 배경

- 관세법령 개정으로 보세운송신고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운송 시 과태료 부과(「관세법」 2024.1.1., 「관세법 시행령」 2024.3.1. 시행)
- ㅇ 관세청 배차예정내역신고 및 출도착 관리 강화 등

_ 목적

- ㅇ 보세운송제도에 대한 정확한 업무 수행 및 업무처리 편의 제공
- o 보세운송·보세구역 회원사의 보세운송제도 업무처리 적법성 제고

□ 지원방안

- ㅇ「보세운송 입무처리 시스템」개발 및 보급 : 상반기
- (방식)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EDI 송수신 방식
- (기능) 보세운송신고·승인신청, 배차예정내역신고, 보세운송 물품 도착 보고, 보세운송수단 확인 및 관리 등
- ㅇ <u>「코피노 EDI 전송 시스템」개선 협의</u> : 계속
- (목적) 코피노(Container Pre Information Notice, 컨테이너 사전정보) 입력으류 방지 및 업무의 비효율·과중(등록된 보세운송 수단 여부건별 확인 등) 해소
- (내용) 코피노 EDI 전송 시스템에서 보세운송 건에 대한 차량번호 항목 입력 시 '등록된 보세운송 수단 여부를 자동 확인'할 수 있는 기능 보완 요청·협의(KLNET, KTNET)
- 「개정 보세운송 제도」교육 시행 : 4월 중
- (목적) 보세운송 관련 개정 관세법규 및 제도에 대한 회원사 소속 임직 원의 이해도 제고 및 법규수행능력 향상
- (내용) 개정 보세운송 제도 및 업무 처리 유외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